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2. 7

발의자 : 지상욱 · 오신환 · 유승민
정태옥 · 박찬우 · 하태경
김성찬 · 정병국 · 김성원
유의동 · 박명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
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 ·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.

그러나 현행은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어 혼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. 이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,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함(안 제8조의6).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6(보훈재가복지서비스)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,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제3조의 참전유공자

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.

օ)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8조의6(보훈재가복지서비스)</p> <p>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,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1. 제3조의 참전유공자</p> <p>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.</p>